

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4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추진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(안 제2조 내지 제4조)
- 나.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를 규정(안 제5조)
- 다.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
(안 제6조 내지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(금연지도원)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0. 04. 01. ~ 04. 21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(기획실-3532, 2020.03.30.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실-3532, 2020.03.30.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없음(복지과-21208, 2020.04.02.)

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 절차)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평창군 금연지도원(이하 “금연지도원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×4센티미터)사진 2매
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)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×4센티미터)사진 1매
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)

제3조(임기)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 절차)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(영 제16

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 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.

제5조(직무수행의 범위)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.

제6조(활동수당 지급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(4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실적 보고 등)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
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
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금연지도원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(남/여)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「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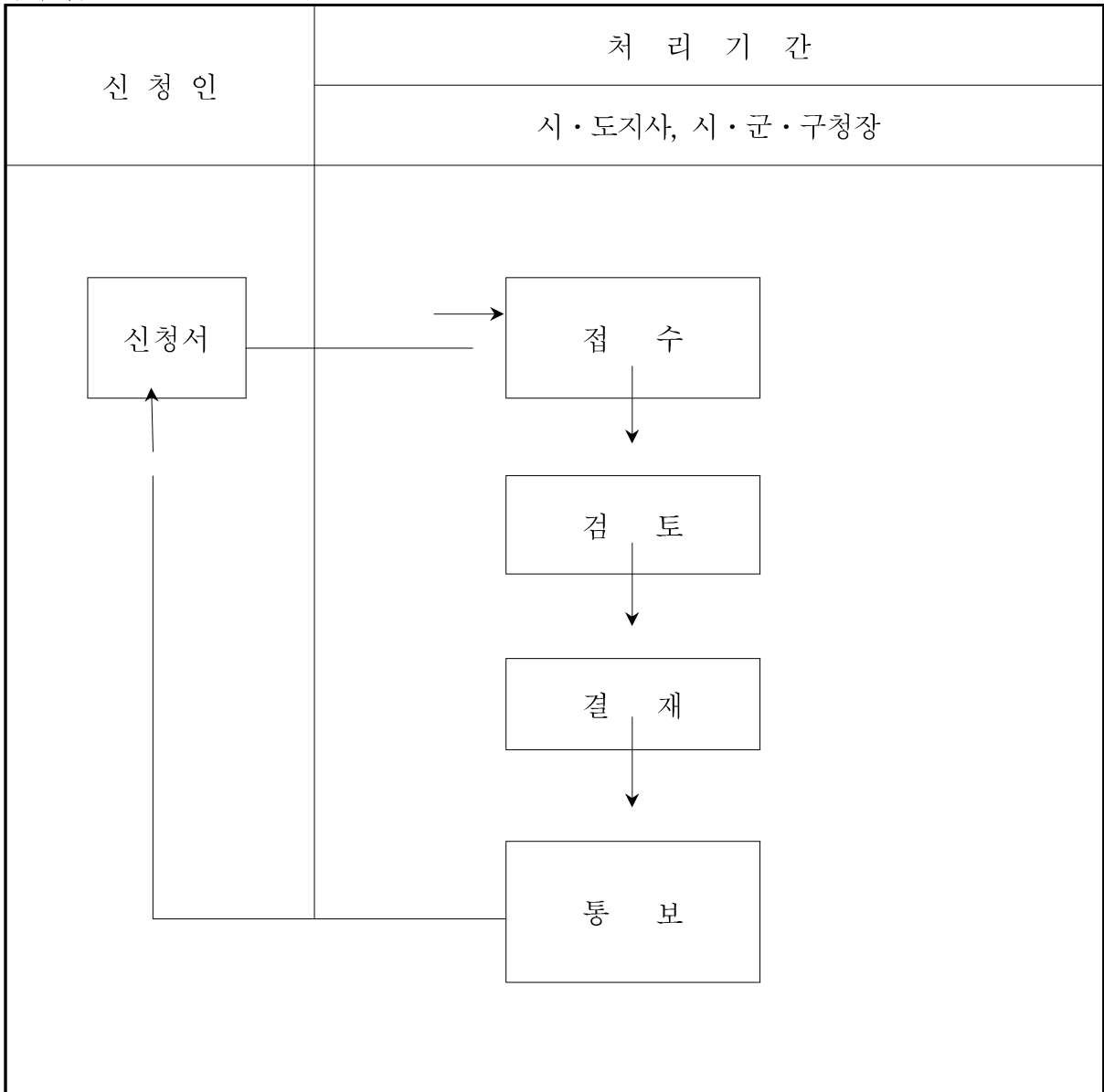
(서명)

평창군수 귀하

첨부물	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(뒤쪽)



[별지 제2호 서식]

금연지도원 추천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(남/여)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추천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사람을 「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,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장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에

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 또는 인)

평창군수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제 20 - 호

위 축 장
금 연 지 도 원

소 속:

성 명:

(한 자)

생 년 월 일:

위 축 기 간: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평 창 군 수

직인

[별지 제5호 서식]

(앞 쪽)
<p>제 호</p> <p>금연지도원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진</p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cm×4cm</p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</p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수</p>
60mm×90mm
(색상 : 연과랑)
(뒤 쪽)
<p>소 속:</p> <p>성 명:</p> <p>생년월일(성별): ()</p> <p>위 사람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수 직인</p>
<p>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</p> <p>2. 법에서 정하는 감시·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</p> <p>☎ 전화번호 : 000-0000-0000</p>
주) 지질은 보존용지(1종) 120g/m ² or 플라스틱

[별지 제6호 서식]

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(남/여)	
	주소(전화번호)		

재발급 신청사유

위 본인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
위촉받은 자로서 「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
을
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일
년 월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평창군수 귀하

- 첨부물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 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1매
 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7호 서식]

단독 직무수행 승인서				
금연 지도원	① 소속(단체명)		② 성 명	
	③ 생년월일		④ 전화번호	
	⑤ 주 소			
⑥ 출입 기간	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		
⑦ 출입 장소				
⑧ 직무수행범위				
<p>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「평창군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font-size: 1.2em;">평창군수 직인</p>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붙임]

관계법령 발췌

□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의5(금연지도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
2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3.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4.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
3. 그 밖에 개인사정,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
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
연락처	(033) 330 - 4820